

2차시

핵심만 쏙쏙! 기업법무실무

회사법 : 주식회사의 기관

변호사 / 공인회계사 이 은 종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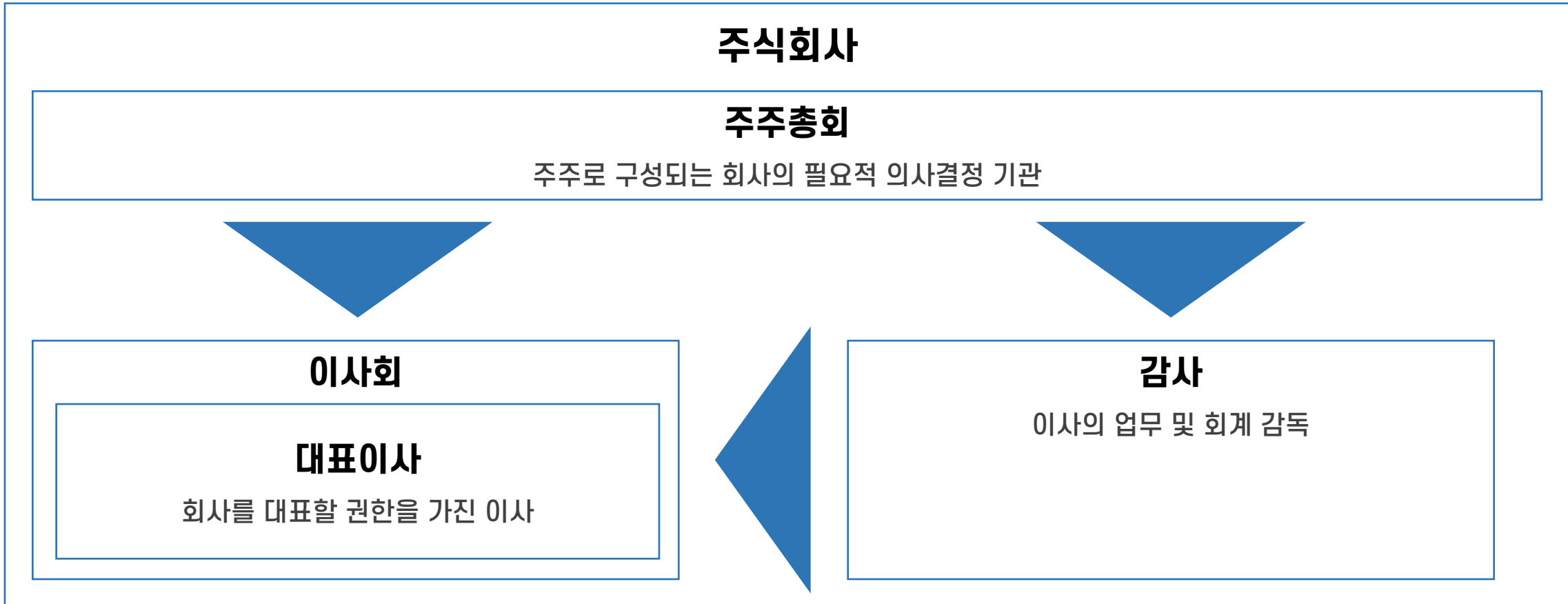
3 **주식회사의 기관**

1. 개관
2. 주주총회
3. 이사 및 이사회
4. 대표이사
5. 감사

3. 주식회사의 기관

1. 개관

주주회사의 기관



3. 주식회사의 기관

2. 주주총회

주주회사의 개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 회사의 기관이라는 의미 외에 ‘주주들이 권한행사를 위하여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있음

필요적 기관

- 회사의 필요적 기관이므로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음
- 회의로서의 주주총회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할 필요는 없음(2004. 12. 10. 2004다25123)

최고의사결정기관

-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주주이익극대화모델에 따르는 경우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을 쉽게 수용할 수 있음
- 대법원 1992. 3. 31. 91다16310판결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도 회사를 구속한다고 판시하여 암묵적으로 주주 전원의 의사가 이사회에 우선할 수 있음을 인정함

3. 주식회사의 기관

2. 주주총회

주주회사의 권한

상법상의 권한

- 상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 가능하며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한 결의는 무효
-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자본금의 감소, 해산
- **회사 기관의 임면**
이사, 감사, 청산인 등의 임면
- **기타 주주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보수의 결정, 사후설립

정관에 의한 권한

- **주주총회 권한 확장**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확장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권한 확대에 의한 이사회 권한 축소가 사실상 이사회를 폐지한 것과 같은 정도로 광범한 경우에는 회사의 기관구조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효
- **주주총회 권한 제한**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정관으로 이사회나 대표이사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권한 위임은 가능
ex) 이사보수의 상한만을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지급액은 이사회에 일임

3. 주식회사의 기관

2.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은 주주총회 중복 개최 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권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집권자

- 원칙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소집
- 예외
 - 1) 소수주주
발행주식의 3% 이상 보유 주주(상장회사는 1.5% 이상 보유 및 6개월 이상의 보유기간 필요)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의 허가
 - 2) 감사 및 감사위원회
 - 3) 법원의 명령

소집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자

소집장소

출석이 예상되는 주주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함

소집시간

소집통지된 시간보다 다소 늦게 개최되는 것은 무방

3. 주식회사의 기관

2.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공고

소집의 통지, 공고

-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발송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통지기간을 10일로 단축
- 주주 전원의 동의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 개최 가능
-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음
-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그 취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 주주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기재한 회의의 목적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음, 주주 전원이 출석하지 않은 한 출석 주주 전원이 의제의 추가에 동의하였어도 마찬가지

3. 주식회사의 기관

2. 주주총회

주주의 의결권과 그 행사

의결권의 제한

- 주주가 회사와 다른 주주들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주식의 속성에 따른 제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
- **주주의 속성에 따른 제한**
 - 1) 자기주식
 - 2) 회사간의 상호보유주식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 3)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 주주가 주주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갖는 이해관계
 - 4) 감사의 임면이나 집중투표의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결의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3. 주식회사의 기관

2. 주주총회

■ 의결권 구속 계약

의결권 구속 계약

- 주주 사이에 일정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일정한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계약
- 주로 동업관계를 맺는 단계에서 주주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경우 많음
- 효력
 - 1) 의결권계약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
 - 2) 의결권계약에 위반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통과된 결의도 완전히 유효하다

3. 주식회사의 기관

2. 주주총회

주주총회 의결

결의 요건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결의요건 가중은 허용되지만 경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의 효력은 총회 폐회시가 아니라 결의가 성립된 즉시 발효함

결의 하자

- **소송형태**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소, 결의부존재확인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 결의취소의 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 결의무효확인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
- 결의부존재확인소
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는 경우
-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3. 주식회사의 기관

3. 이사 및 이사회

■ 업무집행기관

상법은 주주총회 중복 개최 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권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식회사

업무집행기관

- 의사의 결정
- 결정된 의사의 실행

3. 주식회사의 기관

3. 이사 및 이사회

이사의 의무

이사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회사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주의의무,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
-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자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그것이 후에 실패로 판명된 경우에도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경쟁금지**
상법 제397조 제1항,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이 되는 것을 금지함
- **회사기회유용금지**
상법 제397조의2, 일감몰아주기 방지

3. 주식회사의 기관

3. 이사 및 이사회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임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민법 390) 및 불법행위 책임(민법 750)과 별도로 상법 399조 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주주 전원의 동의로 책임 감면 가능, 정관으로 이사 책임 제한 가능
-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401조 1항,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위법행위 유지청구**
상법 402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감사나 소수주주(1%)가 청구권자

3. 주식회사의 기관

3. 이사 및 이사회

■ 이사회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음

이사의 구성

- 이사회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
- 업무집행을 회의체로서의 이사회에 맡김으로서 업무집행에서의 신중함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대체함

이사의 소집

- **소집권자**
각 이사, 이사회가 특정 이사를 소집권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만 소집권을 가짐
- **소집통지**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발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있으면 통지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 개최 가능,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음

3. 주식회사의 기관

3. 이사 및 이사회

■ 이사회 권한

업무집행

- 회사 운영에 관한 사무전반에 대한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함
- **상법 규정**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승인(335조 1항), 주주총회의 소집(362조),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충돌에 관한 승인(397조, 397조의2, 398조), 사채발행(469조) 등은 이사회를 결정주체로 명시
-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또는 특정 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구체적인 위임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업무집행의 감독

-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집행조직인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독
- 감독권은 업무집행의 적법성은 물론이고 타당성에도 미침

3. 주식회사의 기관

3. 이사 및 이사회

■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 **결의요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 다만 회사기회이용 및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함, 결의요건 가중은 가능하지만 경감은 불가능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 불가

- 1) **특별이해관계의 범위**

회사 이익과 충돌하는 이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대표이사의 선임결의에서 후보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님**

- 2) **효과**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음, 의사정족수 산정시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지만 의결정족수 산정시에는 출석한 의사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결의방법**

공개투표가 원칙(이사에 사후적으로 책임 추궁), 이사 전원 동의 시 서면 결의도 가능

3. 주식회사의 기관

4.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선임, 퇴임

-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이사
-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음
- 이사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이사의 지위도 자동적으로 상실
- 임기만료, 사임, 해임, 이사지위의 상실 등의 사유로 퇴임함

대표이사 대표권의 제한

법령에 의한 제한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에게 회사를 대표하도록 함

내부적 제한

일부 업무집행사항을 특정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

제한을 위반한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

- 1) 법령상 제한 위반 행위 : 주총결의/이사회결의
- 2) 내부적 제한 위반 행위 :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3. 주식회사의 기관

4. 대표이사

■ 공동 대표이사, 표현 대표이사

공동 대표이사

- 대표이사 대표권 제한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이사 선임 가능
-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 대표이사는 완전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면 대표행위 공동으로 해야만 함
- **수동대표행위**
회사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하더라도 유효

표현 대표이사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이사자격이 없는 자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위조항 유추적용됨(1985. 6. 11. 84다카963)

3. 주식회사의 기관

5. 감사

감사의 선임 및 종임

감사

-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기관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감사의 선임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됨(보통결의)
- 감사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이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의해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음
- 감사는 당해 회사의 이사, 지배인, 사용인 또는 자 회사의 이사, 지배인, 사용인을 겸할 수 없음

감사의 종임

- 위임 종료사유, 임기의 만료, 사임, 해임(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
-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비상장회사에서는 3%,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0.5%(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0.25%) 및 6개월 보유 요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있을 경우

3. 주식회사의 기관

5. 감사

감사의 권한

감사의 권한

- **이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권**

감사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적법성 감사에 한정되며 명문의 규정(제413조, 제447조의4 제2항 제5호, 제8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타당성 감사도 가능.

-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 및 조사권

- **전문가의 조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음(제412조 제3항).

-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 및 조사권**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은 아님

- **이사회 출석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에게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만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님

-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 이사와 회사 간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3. 주식회사의 기관

5. 감사

감사의 의무 및 책임

감사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비밀유지 의무
- 경업금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부담하지 않음
- 감사록의 작성의무, 주주총회 진술의무, 이사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이 있음

감사의 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3자에 대한 책임 : 상법 제414조 제2항,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사와의 연대책임 : 상법 제414조 제3항,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차시

핵심만 쏙쏙! 기업법무실무

법무실무(1)

감사합니다